

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

1. 견적에 부치는 사항

가. 사업명 : 사회복지시설 우수 근무자 연수사업

나. 사업개요

1) 연수지역 : 베트남 북부(하노이, 하롱베이)

2) 참가인원 : 20명

3) 기간 : 2015. 8. 27 ~ 8. 31 (3박5일)

4) 과업내역 : 따로붙임

다. 사업예정금액 : 금19,500,000원(부가세 포함)

2. 견적서 제출

가. 기간 : 2015. 6. 10(수) 12:00 ~ 2015. 6. 17(수) 12:00

나. 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

다. 방법 : 우편 및 FAX 접수에 한함.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 8길 12-1(화북1동) (F.064-702-3383)

라. 제출서류 : 견적서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

3. 견적참가자격

가.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

나.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‘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’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

다. 『관광진흥법』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

라. 최근 3년간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분야의 해외연수(단일금액 1천만원 이상) 실적이 있는 자

4. 계약상대자 선정방법

가.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 순으로 우리 협의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결정함.

나. 계약상대자 통지 : 2015. 6. 19(금) 개별통보

5. 계약일 : 계약상대자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체결

6. 견적제출 무효

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함.

7. 기타사항
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나.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.

다. 기타문의사항

-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(T.064-702-3784, 담당 김성건 사무국장)

2015. 6. 10

제 주 특 별 자 치 도 사 회 복 지 협 의 회 장



「사회복지시설 우수 근무자 연수사업」 과업설명서

1. 사업경비

- 일정에 따라 항공료, 여행자 보험료, 숙박비, 식비, 현지교통비, 관광입장료, 봉사료, 알선수수료 및 각종세금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.

2. 숙박시설

- 호텔은 1급 이상으로 하며 침실배정은 2인 1실로 한다.

3. 식사 등

-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편성하여 급식토록 한다.

4. 교 통

- 연수기간 중 차량은 25인승 이상으로 냉·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.
- 인솔 안내원은 반드시 1명 이상 동승 시켜야 한다.
- 교통편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(세금, 통행료, 주차료, 봉사료 등)는 여행사가 부담한다.

5. 출입국 수속

- 참가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 협의회와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.

6. 여행자 보험 가입

- 참가자에 대한 해외여행자 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.(보상금액 1억원 기준)
-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.

7. 사업의 시작과 종료

- 연수사업 참가일행이 제주국제공항에 집결 완료한 시점부터 시작되며,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, 해산과 동시에 종료되며 탐방일정 변경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.

8. 연수사업일정 수행 및 변경

- 연수사업일정은 세부일정을 작성한 후,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시 우리 협회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계약체결 후 연수사업 시작 2일전까지 방문지역별 숙소 확보, 식당 및 식사메뉴등 연수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협회회의에 제출한다.
- 우리 협회회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사업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9. 안내원 동행

- 출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안내원 1명을 동행하되, 탐방국의 안내경험이 있고 여행 지역의 지리와 한국어 및 해당국가의 언어구사에 능통해야 하며 해당분야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이 우수한 자로 한다.

10. 탐방 참가인원

- 참가인원은 20명 기준으로 하되, 참가인원 변경시의 경비지급은 1인당 금액을 산출하여 증감된 인원만큼 가감하여 연수금액을 조정한다.

11. 사고자 처리

-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우리 협회회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연수기간 중 발생한 각종사고나 질병으로 탐방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조치를 하여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.

12. 연수사업 경비의 지급 및 집행과 정산

- 연수사업일정 등의 변경으로 인한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증빙서에 의하여 가감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연수사업에 대한 대금은 계약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우리 협의회 확인을 거쳐 여행사의 청구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입금 지정계좌로 지급한다.

13. 구급약품의 휴대

- 여행사는 연수사업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.

14. 책 임

- 기타 연수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, 무성의, 태만,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는 관계 법령과 통상 관례에 의하여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·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.

15. 기 타

- 연수사업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해외연수 안내 및 숙박, 식사제공,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상기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협의회 의견에 따른다.